

일 반 의 안

(9 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25 - 163	농업 근로자 숙소사 건립지원 사업 공모 신청 보고(전략담당관)	1
2025 - 164	(재)거창군장학회 2026년 출연안(인구교육과)	3
2025 - 165	2025년 상반기 군 금고 운용상황 보고(재무과)	9
2025 - 166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15
2025 - 167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경제기업과)	38
2025 - 168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문화예술과)	46
2025 - 169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행복나눔과)	50
2025 - 170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산림과)	59
2025 - 171	거창 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산림과)	70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공모 신청

의안 번호	2025 - 163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공모이유

- 가. 농업 분야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통해 계절근로자 등 농업 근로자(국내 및 외국인)의 주거 안정으로 농촌 고용인력 확보
- 나. 동부권 거점형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 및 확대 운영으로 권역별 농촌인력 중개시스템 구축

2. 공모개요

- 가. 사 업 명 :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 나. 사업기간 : 2026. ~ 2027.
- 다. 사 업 비 : 3,100백만원(부지 매입비 7억원 포함)
 - 공모사업비 : 2,400백만원【국비 1,200(50%), 도비 120(5%), 군비 1,080(45%)】
- 라. 위 치 : 가조면 마상리 91-4, 91-5, 1,443m²
- 마. 사업내용 : 기숙사 1동 신축(연면적 500m², 지상 1층, 10호실)
 - ※ 공모규모 : 전국 5개소, 개소당 15 ~ 24억원(국비 50%, 도비 5%)
 - ※ 공모내용 : 기숙사 신축비용 지원(부지 매입비 및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

3. 추진계획

- 가. 2025. 9. 26. : 기숙사 건립 공모 신청서 제출(거창군 → 경남도)
- 나. 2025. 10월중 : 경남도에서 우선순위 부여 후 제출(경남도 → 농식품부)
- 다. 2025. 10월말 : 서면·현장 평가 실시(농식품부)
- 라. 2025. 10월말 : 공모 최종 발표
- 마. 2026. 1월말 : 감정평가 의뢰 및 부지 매입

4. 기대효과

- 가. 농업근로자(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농업 분야 인력난 해소로 농업경영의 안정화에 기여



(재)거창군장학회 2026년 출연안

의안 번호	2025 - 16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가. 다양한 수요 맞춤형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 조성, 교육 여건 개선 사업 및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거창군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 요

- 1) 근 거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2) 출 연 금 : 3,39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편성액	2026년 요구액	증감
계	3,394	3,394	-
장학기금 확대	2,250	2,250	-
장학사업 추진	665	665	-
한국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	169	169	-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250	250	-
영어 사이버스쿨 운영	60	60	-

3) 내 용

- 맞춤형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 조성(2,250백만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및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등(665백만원)
- 한국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169백만원)
-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250백만원)
- 영어 사이버스쿨 운영(60백만원) ※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나. 부서 의견

- 1)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학기금 확대 조성 및 장학사업 추진 필요

- 2)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 인구 유입 도모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필요
- 3) 승강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승강기대학교 대학생 등록금 지원 필요
- 4) 교육발전특구 사업 영어 사이버스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연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참조

-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2)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 3)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나. 거창군장학회 현황 : 붙임2 참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⑤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 4. 1.>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붙임2

[재]거창군장학회 현황

설립근거	- 법률 :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례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55-940-8813
				홈페이지 : www.gcdream.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2005. 12. 16. - 장학기금 100억원 달성 : 2009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직원현황 (2025. 9. 현원 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0명		0명	0명
임원 (‘25. 9. 기준)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구인모	거창군수	재직기간(당연직)
	상임이사	신○○	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거창군협의회장	2년(‘23.12.26.~’25.12.25.)
	이사	신○○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재직기간(당연직)
	이사	박○○	前거창80번택시 이사	2년(‘24.12.24.~’26.12.23.)
	이사	강○○	거창배재오미자 대표	2년(‘23.12.26.~’25.12.25.)
	이사	강○○	거창군 상공협의회장	〃
	이사	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거창군지부장	〃
	이사	김○○	바르게살기운동 거창군협의회장	〃
	이사	마○○	前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이사	박○○	前거창3·1정신계승발전위원장	〃
	이사	신○○	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장	〃
	이사	안○○	거창문화원장	〃
	이사	신○○	평생학습활동가 회장	2년(‘24.12.24.~’26.12.23.)
	이사	박○○	평생학습동아리 연합회장	〃
	이사	최○○	거창군 새마을회장	〃
	감사	이○○	前거창군학원연합회장	2년(‘23.12.26.~’25.12.25.)
	감사	최○○	행정동우회 거창군분회 부회장	2년(‘24.12.24.~’26.12.23.)
주요기능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필요한 지원			
자본금 (단위:백만원)	12,927 (직전연도말 기준)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3	2024	2025
	예산액	4,293	5,193	5,991
	지자체 지원액	3,229	3,695	3,394
재무현황 (백만원) '24. 12. 31.기준	자산	17,518 (자산 총액)		
	부채	4,609 (부채 총액)		
	자본	12,927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24.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2,423			1,190
				당기순이익
				1,250

참 고

2025년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주요사업 현황

☐ 재산현황

(2025. 9. 기준 / 단위 : 천원)

합 계	기본재산	보통재산	기부심사전	비고
20,040,163	17,500,000	2,410,199	129,964	

※ 기본재산 확대 조성 : 2,500백만원(출연금 2,250, 기부금 250)

☐ 장학생 선발

(단위 : 천원)

분 야	지급내역		
	인원(명)	1인당 지원금액	지급 총액
계	138		139,293
고등학교 재학 장학생	53	500	26,500
수능성적 우수자 특별장학생	18	1,000	18,000
대학 입학 장학생	35	2,000	70,000
출향 향우 자녀 고향사랑 장학생	2	1,000	2,000
지정 장학생	2	1,500	3,000
만학도 장학생	11	300	3,300
예체능 및 과학 특기장학생	17	500~2,000	16,493

☐ 장학사업 추진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사업내용
	계	935,000	
1	중학교 진로·진학 지도사업	50,000	중학교 진로 지도, 진로 체험 지원
2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사업	80,000	초중학교 미술, 체육 등 특기 프로그램 운영지원
3	두드림(DO DREAM) 사업	80,000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국·영·수 학원비 지원
4	영어 사이버스쿨 운영(특구)	60,000	초·중학생 1:1 화상 영어 수업 지원
5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500,000	초·중·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6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165,000	해외 소재 자매결연 학교와 교류 지원

☐ 대학생 등록금 지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지급내역			비고
		인원(명)	1인당 지원금액	지급 총액	
	계	215		187,310	
1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72	본인부담금 100만원 한도	64,227	2025년 1학기
2	한국승강기대학교 대학생 등록금 지원	143	본인부담금 50% 한도	123,083	

2025년 상반기 군 금고 운용상황 보고

의안 번호	2025 - 165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라 2025년 상반기 거창군 금고 공공자금 운용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 금고 자금 운용 현황

○ 회계별 자금운용 평균잔액 현황

(2025년 상반기)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정기예금	공금예금	비 고
합 계		253,738,636	216,222,927	37,515,709	
일반회계		148,962,449	128,038,673	20,923,776	
특별회계	공기업	18,356,411	12,951,401	5,405,010	
	기 타	8,919,084	244,897	8,674,187	
기 금		77,500,692	74,987,956	2,512,736	

※ 평균잔액 : 월 또는 분기(기간)별 계좌의 잔액을 평균한 금액

나. 이자수입 현황

○ 총괄 현황

(2025년 상반기)

(단위:천원)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비 고
		공기업	기 타		
2,700,029	2,095,707	355,453	35,670	213,199	

다. 군 금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 사항

1) 경영실태 평가

구 분	1 금고	2 금고	비 고
경영실태	경영관리 적정 (1등급 / 1등급)	경영관리 적정 (2등급 / 2등급)	

※세부경영지표

항 목	평가시기	1 금고		2 금고	
총자산	2025년 6월말	18.56	1등급(우수)	15.04%	2등급(양호)
고정비율	2025년 6월말	0.47	1등급(우수)	0.91%	2등급(양호)
자기자본	평가대상아님				
대손충당금	평가대상아님				

2) 재무건전성 평가

구 분	1 금고	2 금고	비 고
재무건전성	투자적격	투자적격	

※측정지표

구 분	외국평가기관					
	Moody's		S&P		Fitch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1금고	Aa3	P-1	A+	A-1	A	F1+
2금고	A2	P-1				

구 분	국내평가기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1금고	AAA	AAA	AAA
2금고	AA+	AA+	AA+

라.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수익률, 이자수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기간 (상품별)	평균잔액 (6.30기준)	금 리 (%)	이자액	수익률 (%)
총 계			253,738,636		2,700,029	1.06
1금고 농협은행	일반회계	소 계	148,962,449		2,095,707	
		공공예금	20,923,776	0.65	67,442	
		1개월	42,900,552	2.35~2.60	1,665,054	
		3개월	68,066,298	2.10~3.00	363,211	
		6개월	0	0	0	
		1년이상	17,071,823	2.65	0	
	특별회계	합 계	8,839,686		35,013	
		주차장	소계	511,704		8,636
			공금예금	266,807	0.65	859
			12개월	244,897	2.84~3.18	7,777
		농업인소득지원	공금예금	2,103,049	0.65	6,778
		의료급여	공금예금	53,196	0.65	171
		댐주변지역	공금예금	538,051	0.65	1,734
		발전소주변지역	공금예금	15,380	0.65	49
		산업단지조성	공금예금	5,245,246	0.65	16,906
		골프장사업소	공금예금	373,060	0.65	739
	기금	합 계	77,500,692		213,199	
		식품진흥	소 계	154,131		90
			공금예금	28,131	0.65	90
			12개월	126,000	3.00	0
		재난관리	소 계	3,845,518		51,740
			공공예금	1,613,673	0.65	5,201
			12개월	2,231,845	2.64~3.24	46,539
		아름예술제진흥	소 계	530,206		8,278
			공금예금	2,433	0.65	7
			6개월	527,773	2.74~3.21	8,271
		노인복지	소 계	1,124,837		34,370
			공금예금	77,838	0.65	250
			12개월	1,046,999	2.84~3.18	34,120
		고향사랑	소 계	817,818		5,758
			공금예금	286,163	0.65	922
			6개월	531,655	2.74~2.94	4,836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기간 (상품별)	평균잔액 (6.30기준)	금 리 (%)	이자액	수익률 (%)
1금고 농협은행	기금	중소기업육성	소 계	4,540,342		41,097	
			공급예금	285,095	0.65	918	
			6개월	265,193	2.89	4,429	
			12개월	890,054	2.64~3.25	35,750	
			36개월	3,100,000	3.55	0	
		체육진흥	소 계	1,128,696		36,537	
			공급예금	921	0.65	2	
			12개월	1,127,775	2.84~3.25	36,535	
		재정안정화	소 계	51,382,840		24	
			공급예금	7,573	0.65	24	
			6개월	41,000,000	2.74	0	
			12개월	10,375,267	2.74~2.92	0	
		통합재정	소 계	12,161,052		141	
			공급예금	44,053	0.65	141	
			12개월	12,116,999	2.11~3.20	0	
		옥외광고발전	소 계	348,598		1,665	
			공급예금	60,201	0.65	194	
			6개월	88,397	2.81	1,471	
			12개월	100,000	2.99	0	
			36개월	100,000	3.54	0	
		자활	소 계	1,466,654		33,499	
			공급예금	106,655	0.65	343	
			12개월	1,359,999	2.39~3.25	33,156	
2금고 경남은행	특별회계	합 계		18,435,809		356,110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공예금	79,398	0.70	657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소 계	6,779,527		151,345	
			공공예금	1,757,431	0.70	2,261	
			1개월	44,198	1.95	149,084	
			3개월	502,762	2.25		
			6개월	2,254,143	2.40		
			1년이상	2,220,993	2.50~3.15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소 계	11,537,079		204,108	
			공공예금	3,647,579	0.70	7,159	
			6개월	1,922,651	2.65	196,949	
			1년이상	5,966,849	2.50~3.1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7조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7조(의회 보고 등) ① 군수는 「거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제8조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별로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보고서를 거창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2. 금융상품별 수익률
3.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거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 8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8.12 2015.7.22.)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8.12.)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25 - 166
----------	------------

제출자	거창군수
-----	------

① 가조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

1. 제안이유

- 가. 농업 분야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통해 농업 근로자 주거 안정으로 농촌 고용인력 확보
- 나. 공공형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확대 운영을 위해 숙소 마련은 필수적이며, 기숙사 건립을 위해 부지 및 건축물 매입 추진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91-4, 91-5
- 2) 사업기간 : 2025. 10. ~ 2027. 12.
- 3) 사 업 비 : 31억원 정도(건축공사, 부지매입 및 부대공사 등)
- 4) 내 용 : 기숙사 건립(연면적 500㎡, 투룸형 10실 및 부대시설)

나. 취득 및 처분 재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공시지가)	취득 시기	비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취득	소계	2필지		1,674	181,565	2026	
	토지	가조면 마상리 91-4	답	1,002	114,228		소유자 (문*인)
	토지	가조면 마상리 91-5	창고 용지	441	55,301		소유자 (동***협)
	건축물		창고	231	12,036		
처분	소계			231	12,036		철거 후 사업부지 활용
	건축물	가조면 마상리 91-5	창고	231	12,036		

다. 추진경과

- 1)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도 의사 확인 : 2025. 8.
- 2)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 동의서 제출 : 2025. 9.

라. 향후계획

- 1) 2026년 농업 근로자 기숙사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신청 : 2025. 9.
- 2) 취득재산 감정평가 실시 : 2026. 1.
- 3) 취득재산 토지보상협의 매수 : 2026. 2.

마. 기대효과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로 농업경영의 안정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1] 참조

4. 관계법령 : [붙임2] 참조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붙임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가조면 마상리 91-4, 91-5)



현장 사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거창군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1. 제안이유

- 가. 수영 수요 대비 인프라 부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거점 돌봄 시설 필요, 군민 수요에 맞는 체계적인 평생 학습 공간 부족
 나. 수영장, 거점돌봄시설, 평생학습시설로 건립으로 전 군민이 학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인 교육·문화 복합시설 조성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거창군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 2)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11(거창초등학교 내)
- 3) 사업기간 : 2024. ~ 2029.
- 4) 사 업 비 : 29,846백만원(국비*14,923 군비 9,923 기금**5,000) 세부내역 붙임1)
 *국(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기금(소멸대응기금기초계정)
- 5) 사업내용 : 수영장(25m 5레인), 거점돌봄시설, 평생학습시설 등 건립
 - 사업규모 : 연면적 5,673㎡(지하1층 ~ 지상5층), 건축면적 5,942㎡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연면적				
계				5,673	23,098,000			
취득	건물	거창읍 중앙리 311 (거창초등학교 내)	학교 용지	5,673	23,098,000	2029	건물 신축	

*기준가격 산정 근거 : 건축비 + 철거비

- 건축비 : 3,945,823원×연면적 5,673.34㎡=22,386,959,000원

*건축단가 : 2024년 공공건축물건립 공사비책정가이드라인 건축공사비지수상승률(6.79%)참조

- 철거비 : 711,594,000원(24년 경남교육청 시설공사 예산 단가표 참고)

○ 주요시설

구 분	시 설 명	면 적(m ²)	비 고
계		5,673	
지하1층	전기실, 기계실, 물탱크실	324	
지상1층	수영장(25m 5레인), 조리실 겸 식당, 매점	1,378	
지상2층	돌봄교실(6실), 놀이공간, 사무실	876	
지상3층	동아리 및 방과후실(4실), 디지털실, 창의융합메이커실, 소·대강의실, 상담실	1,378	
지상4층	강의실(5실), 활동가실, 다목적 강당	1,378	
지상5층	카페, 옥상 녹화 공간	339	

다. 추진경과

- 1) 2024. 08. :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
- 2) 2024. 10. ~ 2025. 9. : 타당성 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추진 중)
- 3) 2024. 12. :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군민 설문조사
- 4) 2025. 02. : 거창초 학교운영위원회 방문 설명
- 5) 2025. 03. : 교육부 사업계획 변경(수영장 반영)
- 6) 2025. 07. :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 7) 2025. 08. : 경남도 공공건축 사전검토 완료
- 8) 2025. 09. : 학교 사용 부지 협의 완료

라. 향후계획

- 1) 2025. 10.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공유재산 심의
- 2) 2025. 10. ~ 12. : 설계 공모 추진
- 3) 2026. 01. ~ 12. : 실시설계 추진
- 4) 2027. 01. ~ 2029. 01.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9. 3. : 운영(예정)

마. 기대효과

- 1) 공익적 목적의 개방형 수영장 운영으로 주민 건강, 복지 증진
- 2) 학생 돌봄 공복 해소, 성인들의 평생 학습 참여 기회 확대로 교육·문화 복지 격차 해소

3. 사업비 세부내역 : [붙임1] 참조

4. 현장사진 및 조감도 : [붙임2] 참조

5. 관계법령 : [붙임3] 참조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비 고
총 계		29,846	
공사비	• 건축공사비 : 23,098백만원(건축비+철거비) -건축비 : 3,945,823원×연면적 5,673.34㎡=22,386,959,000원 *건축단가 : 2024년 공공 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 라인 참고 / 발주 시점은 현재와 다르므로 건축단가에 건축공사비 지수 상승률(6.79%)을 적용하여 보정 -철거비 : 711,594,000원 *철거단가 : 24년 경남교육청 시설공사 예산 단가표 참고	23,098	
설계비	• 설계비 : 1,172백만원(부가세포함) - 설계비 : 총공사비(23,098백만원)×4.59%=1,060백만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제2종, 중급의 대가 요율 4.08% + 0.51%(설계대가 요율에 대한 추가 요율 적용) - 부가세 : 설계비(1,165)×10% = 106백만원 - 손해배상보험료 : 설계비(1,165)×1.212%=6백만원 (부가세포함)	1,172	
부대비1	• 감리비 : 1,591백만원 - 건축(1201), 전기(346), 통신(28), 소방(16)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운용 요령, 실비정액 가산방식 적용 등 • 해체감리비 : 61백만원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 설계관련비용 : 223백만원 - 설계공모비용 : 117백만원(설계비의 10%) - 설계의도 구현관련 : 106백만원(설계비의 9.03%)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 운영설비비 : 1,190백만원 - 운영설비비 : 총공사비(23,098백만원)×5%=1,190백만원 • 시설부대비 : 54백만원 - 시설부대비 : 총공사비(23,098백만원)×0.23%*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기타측량조사비 : 238백만원 - 조사 및 측량비 : 총 공사비(23,098백만원)×1%	3,313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비 고
부대비2	• 각종 인증 수수료 : 35백만원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 8백만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7.5백만원 - 녹색건축 인증 : 18백만원(예비인증+본인증) - 에너지 절약 계획서 : 1.5백만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녹색건축물 지원 조성법	35	
부대비3	• 설계적정성검토 : 4백만원 - 설계적정성검토비 : 총 사업비(29,845백만원)×0.132% • 설계안전성검토 : 2백만원 - 300억 미만 200만원/건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6	
예비비	• 예비비 : 2,222백만원 - 예비비 : 공사비+설계비+부대비의 약5%	2,222	

붙임2

현장사진 및 조감도



현 장 사 진(거창읍 중앙리 311)



조 감 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25 - 166	제출자	거창군수
----------	------------	-----	------

③ 도시바람길숲 사업을 위한 고속도로 유휴부지 매입

1. 제안이유

- 가. 최근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도심 지역에서는 폭염, 열섬현상, 미세먼지 농도 상승 등 환경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책으로 자연기반 해법의 일환으로 도심숲 조성이 강조되고 있음.
- 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심 내 유휴지를 활용한 도시숲 조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거창군은 이에 근거하여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매입해 도시바람길 숲을 조성하고 생활권 녹지 확충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 2025. 9. ~ 2028. 12.
- 2) 위 치
 - 건계정→거열산성진입도로→남하면→창포원(11km)
 - 건계정→국도24호선→마중길→국농소→창포원(7km)
 - 하천생성숲(건계정→위천→황강→남하면→창포원)(5km)
 - 거창창포원 내
- 3) 사업내용 : 가로연결숲 18km, 하천생성숲 5km, 거창창포원 바람길 브릿지 조성 등
- 4) 사 업 비 : 15,000백만원(국비 7,500 도 2,250 군 5,250)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2026년				2027년 이후	비고
	계	국(지특)	도	군		
15,000	1,000	500	150	350	14,000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m²,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계				15,834	528,855			
취득	토지	대평리 60-1번지	잡	15,834	528,855	2026. 1.	도시숲사업 활용	

※ 기준가격 : 공시지가(33,400원/m²)×면적

다. 추진경과

- 1) 2024. 10. :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산림청 방문
- 2) 2025. 2. ~ 7. : 기후변화 대응 도시바람길 숲 조성방향 수립 용역 완료
- 3) 2025. 3. 18. : 한국도로공사 부지 매입의향 조사(한국도로공사 → 거창군)
- 4) 2025. 4. 2. :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방안 검토보고
- 5) 2025. 4. 17. : 우리군 검토의견 회신
- 6) 2025. 8. : 군 지방재정영향평가 승인
- 7) 2025. 9. : 2026년 국비(지특) 5억 확보

라. 향후계획

- 1) 2025. 9. : 경남도 지방투자심사 의뢰
- 2) 2025. 10. : 한국도로공사 매매계약 사전협의
- 3) 2025. 10. : 거창군 도시바람길 숲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4) 2026. 1. : 매매계약서 작성 및 부지매입
- 5) 2026. 5. : 용역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6) 2026. 6. :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 7) 2026. 1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8) 2026. 12. : 공사 착공
- 9) 2028. 12. : 공사 준공

마 . 기대효과

- 1) 숲 및 경관 녹지 조성을 통해 ‘청정거창’ 이미지 강화 및 고속도로 이용자 대상 시각적 홍보 효과로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
- 2) 도심 유입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대응 도시숲 기능 수행 바람길 숲 조성 등 친환경 사업의 연계 기반 마련
- 3) 주기장, 어린이 체육시설, 체험장 등 주민편의시설로의 활용 가능 및 타 부서 다기능 부지 활용 가능 등 중장기 도시계획 대응 용이, 공공 목적에 맞는 지속가능한 활용 기반 마련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1] 참조

4. 사업방향 및 타 지자체 조성사례 : [붙임2] 참조

5. 관계법령 : [붙임3] 참조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 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위 치 도(거창읍 대평리 60-1번지 일원)



현장 사진

도시숲 조성사업 방향



1.5℃ 시원한 거창 만들기



주간:그늘숲

: 그늘 면적 확대를 통한 주간 열섬 완화 효과



야간:바람길숲

: 야간 찬공기 생성 및 확산 능력 향상을 통한 대기 순환

거창읍 및 남상면	생성숲	파편화된 녹지 보완
	시가지	- 공공기관 : 관공서 내 경계부 녹지 보완, 주차장 잔디블럭 도입 등 - 공유지, 학교, 빈집 : 경계부 녹지 보완, 잔여 공유지 숲 조성, 내부 정원 조성 등 - 주차장 : 잔디블럭 도입(인공피복 축소) - 가로계획 : 도로폭 별 가로수 계획 수립
	농경지	정자목, 보호수 무더위 쉼터 녹화 : 기존 정자목, 보호수가 위치한 지점(2016년 보호수 현황 자료)을 거점으로 디딤·확산숲을 조성해 농경지 사이에서 찬공기의 흐름을 확산
	하천변	구간별 녹화 전략 수립(예: 거열교~거창교 구간 - 찬공기 강화, 거창교~창동교 구간 - 주차장 녹화, 연결숲 확충)
가조면	농경지 일대	정자목, 보호수 무더위 쉼터 녹화 : 기존 정자목, 보호수가 위치한 지점(2016년 보호수 현황 자료)을 거점으로 디딤·확산숲을 조성해 농경지 사이에서 찬공기의 흐름을 확산

□ 타 지자체 조성사례



전남 광양시 폐철도 미세먼지 차단 숲(유허부지 활용)



시흥시 곰솔누리 숲(유허부지 활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안 번호	2025 - 167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가.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신용 보증재원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대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2) 대 상 :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3) 사 업 비 : 450백만원(군비)

- 2026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 기간	2025년 예산액	2026년 요구액	비 고
2026년	450	450	

4) 사업내용 : 관내 소상공인 신용보증

나. 부서의견

1) 대내외적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 소비위축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2)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보증지원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출연이 필요함

3) 경남도내 타 시·군 출연금 지원현황 및 경남도와 신용보증재단 시·군 출연금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였음.

3. 참고사항 : 붙임

가. 관계 법령

나. 경남신용보증재단 현황

다. 시군 출연금 관련 현황

라. 관련 공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설립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전화번호: 1644-2900 홈페이지:www.gnsinbo.or.kr	
주요연혁	1996.06.05. 경남신용보증조합 설립 2000.03.20. 경남신용보증재단 전환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25. 9. 3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31명		117명 * 이사장 포함		14명	
임 원 (‘25. 9.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이**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23.1.1~’ 25.12.31	
	비상임이사	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4.3.18~ (당연직)	
	〃	조**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		‘24.12.30~ (당연직)	
	〃	허**	경남은행 창원영업그룹장		‘25.6.1~’ 27.5.31	
	〃	김**	NH농협은행 경남영업부장		‘23.6.1~’ 25.5.31	
	〃	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교육연구부장		‘25.6.1~’ 27.5.31	
	〃	신**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		‘22.9.1~’ 27.5.31	
	노동이사	공**	경남신용보증재단 부부장		‘25.6.1~’ 27.5.31	
	감사	김**	다음회계사무소이사		‘24.9.1~ ‘26.8.31	
주요기능	신용보증, 신용조사, 구상채권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자본금 (단위:백만원)		355,198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76,006 (직전연도말 기준)	
최근 3년간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3	2024	2025	재무현황 (백만원) ’24.12.31 기준	자산
	예산액	462,427	522,827	574,156		부채 ¹⁾
	지자체 지원액*	16,050	16,350	17,900		자본 ¹⁾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4.12.31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43,298			87,511		△44,213

붙임3

시군 출연금 관련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25.6월 기준)

구분	소상공인('22년)		보증잔액		시·군 출연금				
	사업체	비중	금액	비중	'24년 실적	'25년		'26년	
						요청	실적	기준*	요청
합 계	461,928	100%	25,676	100%	143.5	216.5	157	204.5	212
창원시	131,859	28.5%	7,787	30.3%	20	64	32	63	63
진주시	47,717	10.3%	2,756	10.7%	20	20	20	20	20
통영시	20,478	4.4%	1,125	4.4%	6	9	6	8.5	8.5
사천시	15,992	3.5%	780	3.0%	7	7	7	7	7
김해시	77,640	16.8%	4,220	16.4%	20	32	20	32	32
밀양시	15,441	3.3%	793	3.1%	8	8	8	6	8
거제시	30,064	6.5%	2,122	8.3%	23	24	20	16.5	20
양산시	50,522	10.9%	2,656	10.3%	8	19.5	10	20	20
의령군	3,390	0.7%	167	0.7%	2	2	2	2	2
함안군	11,743	2.5%	812	3.2%	6	6.5	6	6.5	6.5
창녕군	7,763	1.7%	391	1.5%	3.5	4	3.5	4	4
고성군	7,983	1.7%	303	1.2%	3	3.5	3.5	3	3.5
남해군	7,412	1.6%	318	1.2%	3	3	5	2.5	3
하동군	7,337	1.6%	259	1.0%	3	3	3	2.5	3
산청군	5,741	1.2%	234	0.9%	2	2	2	2.5	2.5
함양군	5,519	1.2%	192	0.7%	2.5	2.5	2.5	2	2.5
거창군	9,294	2.0%	566	2.2%	4.5	4.5	4.5	4.5	4.5
합천군	6,033	1.3%	196	0.8%	2	2	2	2	2

- 소상공인 수 (시)창원>김해>양산>진주>거제>통영>사천>밀양
(군)함안>거창>창녕>고성>남해>하동>합천>산청>함양>의령
- 소상공인 수 대비 (시)거제>밀양>사천>진주>통영>김해>양산>창원
출연금 규모 (군)의령>함안>거창>함양>창녕>하동>남해>고성>산청>합천

*기준 : 총보증공급(25%), 보증잔액(25%), 대위변제(25%), 재정자립도(10%), 지역내총생산(10%), 사업체수(5%)



"전국 최고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솔루션 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



수신 거창군수(경제기업과장)

(경유)

제목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요청(거창군)

1. 거창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재단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해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 등 지원시책을 확대하였으나, 3高현상 지속 및 실물경기 회복 둔화로 소상공인 부실율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뿌리와의 같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보증재정 기반인 기본재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불임과 같이 출연을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6년 거창군 출연금 협조요청 1부. 끝.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부장	홍준기	부장	김자근	본부장	박상진	이사장	2025. 8. 6. 이효근
협조자							
시행	경영기획 2025-956	(2025. 8. 6.)	접수	경제기업과-43493	(2025. 8. 6.)		
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4층(창원컨벤션센터) / https://gnsinbo.or.kr/						
전화번호	055)715-5148	팩스번호	055)717-0055	/ laniar21@gnsinbo.or.kr		/ 대국민 공개	

2026년 거창군 출연금 협조요청

출연 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자체 및 금융회사, 기업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

○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 정부출연금, 도·시·군 출연금, 금융기관 출연금, 기타 기관·단체 출연금, 보증료 등

○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행정지원)

* 도지사는 안정적 재단 운영을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에 출연금을 요청할 수 있음

재단 현황 [3高현상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 부실을 높은수준 지속]

○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자수 100.8만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 기록

- 경남 폐업자 5년 새 최대치인 5만 6천여명으로 재단 부실 연결 가능성 高

○ 신용보증 현황

- '25년 말 추정 운용배수^(보증잔액/기본재산) 7.13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 예상

구분	보증잔액	출연금액	대위변제순증액	당기순손실	기본재산	운용배수
'24년말	24,656억	534억	1,504억	442억	3,552억	6.94배
'25년말(추정)	26,360억	554억	1,343억	410억	3,696억	7.13배

* ('25.6월말 기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월보상 운용배수 추정 : 전국평균 7.07 > 경남재단 6.74(9번째)

○ 대위변제 현황

- '25년 말 대위변제율 5.09% 예상^(추정 대위변제순증 1,343억원 / 추정 보증잔액 26,360억원)

* 3高현상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 부실우려 여전함에 따라 고위험 정책보증 확대 가능성 상존

* (참고) 최근 3개년 대위변제율 추이 : ('22) 1.1% ('23) 3.9% ('24) 6.1%

거창군 주요실적 현황

구분	총보증공급*		보증잔액**		대위변제*** 순증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5년 상반기 실적	942건	262.4억원	2,531건	566.5억원	61건	9.4억원

* 총 보증공급 : 신규보증, 기한연장, 기보증회수보증(대환보증)을 모두 포함한 실적

** 보증잔액 : 기준일(25.06.30.) 현재 재단을 이용중인 건수 및 금액

*** 대 위 변 제 : 고객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재단이 채권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
(대위변제 순증 = 대위변제 발생 - 대위변제 회수)

○ '24년 신규보증지원 효과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신규보증 1억원 당	1.86억원	0.84억원	1.99명	0.71명

○ '24년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대비 보증대출의 금리 절감효과

구분	제1금융권 대비	제2금융권 대비
총 금융비용 절감효과	60.1억원	642.0억원

* 출처 : 「2024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효과 분석 보고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 '26년 보증운용 방향 [정책자금 확대 운용배수 정책 유지, 우수 시·군 인센티브 강화]

- (운용배수) 시·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확대 위해 시·군 출연 기준액 충족시 운용배수 15배 적용정책 유지^(2025년부터 시행 중)

<운용배수 차등 적용 시스템>

구분	출연금 기준액 미달시	출연금 기준액 이상 충족시
운용배수	출연금의 12배 적용	출연금의 15배 적용
적용 예	ex) 기준액 10억, 출연액 9억(기준액 1억 미달) → 9억 × 12배 = 108억 정책자금 공급	ex) 기준액 10억, 출연액 11억(기준액 1억 초과) → 11억 × 15배 = 165억 정책자금 공급

- (한도배분)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 지역별 출연액 비례하여 보증한도 배분
 - 도자금 및 특례보증 한도배분시 출연규모 등을 감안 지역별 배분
 - (인센티브) 시·군별 재단 출연 인센티브 강화
 - 출연 우수 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보증료 0.1%p 감면^{*(금융인센티브)}
(또는 보증한도 우대) 및 재단 컨설팅 10% 우선 배정^(비금융인센티브)
 - 道 정책자금 보증한도 배정시 시·군별 출연 비중 점진적 확대(계획)
- * ('25년) 업체수 80% + 출연비중 20%(시행중) → ('26년) 출연비중 25% → ('27년) 출연비중 30%

□ 거창군 출연요청액 : 최소 4.5억원

- (출연배분) 배분항목을 6개로 세분화하여 공정성 및 형평성 제고

구분	총보증공급	보증잔액	대위변제	재정자립도	GRDP	사업체수
비율	25%	25%	25%	10%	10%	5%

○ 거창군 최근 5개년 출연 및 대위변제 현황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합계
출연금액	2.5억원	3억원	4억원	4.5억원	4.5억원 (6. 30. 기준액)	18.5억원
대위변제액	5.4억원	4.3억원	16.4억원	25.2억원	9.4억원 (6. 30. 기준액)	60.7억원

- 참고 1. '26년 거창군 출연 요청액
2. 거창군 정책자금 운용배수별 보증규모(예). 끝.

참고1

'26년 거창군 출연 요청액

{기준일자 : '25.6.30. 단위 : 억원, %, 개소, 사업체수: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2022)}

구분	총보증공급(25%)		보증잔액(25%)		대위변제(25%)		재정자립도(10%)		GRDP(10%)		사업체수(5%)		비율 합계	'26출연배분			'25년출연금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립도	비율	금액	비율	업체수	비율		1차	기준*	요청	출연	요청
거창군	3,699	0.53	566	0.55	91	0.35	8.97	0.39	16,453	0.15	9,551	0.10	2.07	4.25	4.5	4.5	4.5	4.5
합계	175,097	25	25,676	25	6,415	25	270.33	10	1,129,497	10	482,366	5	100	205	205	212	157.0	216.5

* 기준금액 산정(15배수 적용기준) : 0.25 또는 0.75 기준으로 0.5단위 반올림 ex) 2.44 → 2.5 / 19.74 → 19.5 로 반영

** 최종 요청금액 산정 : Max['26년 기준금액, '25년 실제출연금]으로 산정. 단, '25년 실제출연금이 당시 출연요청액보다 클 경우에는 Max['26년 기준금액, '25년 출연요청액]으로 산정.

*** '26년 출연 요청금액을 초과하여 출연 가능. 출연 기준금액 충족시 운용배수 15배수, 미달시 12배수 적용

※ 재정자립도 비율 산정내역('24년 기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시·군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진주시	거제시	함안군	사천시	창녕군	통영시	밀양시	산청군	함양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의령군	합천군
자립도	31.42	28.21	27.35	19.67	16.51	16.12	15.48	13.07	13.06	12.99	10.48	10.39	10.3	10.04	9.79	8.97	8.42	8.06
점수	1.4/18	1.35/18	1.3/18	1.25/18	1.2/18	1.15/18	1.1/18	1.05/18	1.0/18	1.0/18	0.95/18	0.9/18	0.85/18	0.8/18	0.75/18	0.7/18	0.65/18	0.6/18

참고2

거창군 정책자금 운용배수별 보증규모[예]

(단위:억원)

구분	'26년 출연금 기준액	기준액 충족시		기준액 미달시	
		출연금 (ex.100%출연시)	보증규모 (운용배수 15배)	출연금 (ex.90%출연시)	보증규모 (운용배수 12배)
거창군	4.5	4.5	67.5	4.1	49.2

* 출연금 기준액 충족시 출연금의 15배 운용배수 적용, 미달시 12배 운용배수 적용.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

의안 번호	2025 - 168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차질 없는 문화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1)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
- 2) 대 상 : (재)거창문화재단(이사장 구인모)
- 3) 사 업 비 : 1,638,584,000원
- 2026 예산편성 요구사항

사업기간	2024년 예산액	2025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균 비	기 타
2026년	1,426,125	1,638,584	1,638,584	-	-	1,638,584	

4) 사업내용

- 문화재단 사무국 인건비(직원 11명, 기간제 4명) 지원
- 문화재단 사무국 경상경비(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지원

나. 부서의견

- 1)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2017년 설립 이후 운영 10년차에 접어드는 거창문화재단은 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거창국제연극제, 한마당대축제 등 기획·운영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
- 2)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들의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사무처 직원 인건비 및 거창문화센터 관리 등을 위한 예산을 출연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나.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 제1항, 제2항

4. 참고사항

- 가.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현황
나.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운영지원 사업(출연금-인건비,경상적경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69호, 2025. 4. 1., 일부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경제복지국 문화관광과) (시행일 : 2016.11.23.)

제4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참고1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현황

설립근거	법률 :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전화번호 : 055-940-8460 홈페이지 : www.gccf.or.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2017. 1. 4.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24. 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6명		6명			10명(파견6 포함)
임원 (‘23. 9.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18. 07. 01. ~
	상임이사		공백			
	비상임이사	박○○	문화예술과장			2025. 7. 8. ~
		안○○	거창문화원장			2025. 2. 17. ~ 2027. 2. 16.
		이○○	한국예총거창지회 회장			2025. 2. 17. ~ 2027. 2. 16.
		김○○	사)아람예술제위원회 위원장			2025. 2. 17. ~ 2027. 2. 16.
		백○○	前거창군민의날 기념행사 추진위원장			2025. 2. 17. ~ 2027. 2. 16.
		이○○	前 거창군청 지방행정사무관			2025. 2. 17. ~ 2027. 2. 16.
		김○○	前 대성일고 교사			2025. 2. 17. ~ 2027. 2. 16.
		이○○	시사통신 본부장			2025. 2. 17. ~ 2027. 2. 16.
		양○○	르네상스아카데미 대표			2025. 2. 17. ~ 2027. 2. 16.
		신○○	거창영화인협회 제작감독			2025. 2. 17. ~ 2027. 2. 16.
		김○○	해피한 오케스트라 거창 예술감독 겸 지휘자			2025. 2. 17. ~ 2027. 2. 16.
		최○○	사)한국연극협회 거창지부장			2025. 2. 17. ~ 2027. 2. 16.
		신○○	사)한국미술협회 거창지부 사무국장			2025. 2. 17. ~ 2027. 2. 16.
		박○○	영산대학교 아트엔테크놀로지대학 부교수			2025. 2. 17. ~ 2027. 2. 16.
	감사	김○○	세무사김희창사무소 대표 세무사			2025. 2. 17. ~ 2027. 2. 16.
		윤○○	재무과장			2025. 7. 8. ~
주요기능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문화예술단체 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 ·거창한마당대축제 및 국제연극제 기획, 운영 ·문화공연 기획 및 운영 ·문화예술관련 국가, 경상남도, 거창군의 위탁,대행,보조사업 ·그 밖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50백만원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3	2024	2025	재무현황 (백만원) ‘24. 12. 31.기준	출자 : 50백만원 출연 : 1,426백만원(‘25.)
	예산액 ²⁾	3,920	4,432	4,612		자산 804 (자산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3,620	4,154	4,320		부채 576 (부채 총액)
						자본 ¹⁾ 227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4. 12. 31.기준	총수익 5,169				총비용 4,974	당기순이익 39

참고2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운영지원 사업(출연금)

- 사업목적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한 차질 없는 문화재단 운영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사업장소 : 거창문화재단 일원(거창문화센터)
- 사업비 및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내역	기정액	2026년 예산액		증감	증감사유
			요구액	반영액		
합계		1,426,125	1,775,545	1,638,584	192,667	
인 건 비	소 계	657,443	773,599	747,758	60,523	
	처장,단장,단원	518,035	575,333	575,333	57,298	단원 신규 채용,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존 인력 인건비 상승률 반영
	기간제근로자	139,408	198,266	172,425	3,225	연극제 전문인력 인건비 삭감
경상경비	소 계	768,682	1,001,946	890,826	132,144	
	퇴직급여	34,200	49,400	49,400	15,200	단원 신규채용 및 인건비 인상분 반영
	평 가 급	21,000	34,560	34,560	13,560	인건비 인상분 반영
	사무관리비	183,420	180,380	180,380	△3,040	
	공공운영비	224,739	282,617	282,617	57,878	전기사용료, 각종 수수료 인상 반영 문자사용료 전년 수준 반영, 과목경정
	회의운영비	14,643	2,243	2,243	△12,400	예산 편성지침에 따른 과목경정
	복리후생비	59,300	69,660	66,540	7,240	4대 보험료 현실화 및 인력 추가 채용 반영
	여 비	30,000	30,000	30,000	0	
	업무추진비	12,000	12,000	12,000	0	
	직무수행경비	28,500	36,006	36,006	7,506	인력 추가 채용 반영
	연구개발비	0	35,000	20,000	20,000	공연장 예매시스템 개발비(교체) 반영
	교육훈련비	2,000	7,000	2,000	0	
	수선유지교체비	142,200	198,400	158,400	26,200	노후장비 정비 및 로비 에어컨탄설치비 반영
	관서업무비	4,280	4,280	4,280	0	
	일반보상금	2,400	2,400	2,400	0	
	자산취득비	10,000	58,000	10,000	0	

※ 최근 3년간 운영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지원금액	1,154,610	1,260,212	1,426,125	1,638,584	재단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
전년대비증감	증) 178,610	증) 105,602	증) 165,913	증) 192,667	
예산과목	출연금(306-01)				

권리중심 최종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5 - 169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취업 취약계층인 최종증장애인에게 사회참여의 기회 제공하고, 비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권리중심 최종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사업 : 권리중심 최종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나. 위탁참여인원 : 2명(예정)

다. 위탁사무

- 1) 일자리 참여자 모집·선발·교육·훈련·사후 관리 등 업무 수행
- 2) 참여자 근태관리 및 인건비 지급 등

라. 위탁기간 : 2026. 3. 1. ~ 2029. 2. 28.(3년)

마.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바. 수탁자격 : 거창군에 소재하며 아래 기준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 1)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3)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사.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1) 단순 노무 제공이 아닌 중증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참여를 실현하는 일자리의 근무내용을 고려했을 때, 최종증장애인의 고용 및 복지분야에 특화된 민관기관에 위탁시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음

나. 관계법령

- 1)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실시)
- 3)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 4)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5) 「2025년 권리중심 최종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안내」 p.16~18

다. 향후계획

- 1)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5. 10월 임시회
- 2)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2026. 1월
- 3) 위·수탁 협약체결 : 2026. 2월 중

라. 소요예산(2026년 기준) : 연 16,885천원(도5,066, 군11,819)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경비

마. 위탁운영계획 : 붙임

2026년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도자체 위탁 추진계획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소득보장과 근로연계를 통한 자립생활 도모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26. 3. 1. ~ 2029. 2. 28.(3년)
- 추진방법 : 민간위탁(공모)
- 위탁 참여인원 : 2명(예정)
- 사업비 : 연 16,885천원(도 5,066, 군11,819)
-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복지형)지침 준용에 따라 사업비 매년 변동
- 운영비 집행, 참여자 복무 규정 등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을 따름
- 사업대상 : 거창군 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등록·미취업 최중증장애인

최중증장애인이란

- 중증장애인 중에서 장애인보조기구나 활동보조인 등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거나, 불편함을 느껴 사실상 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장애의 정도가 극도로 심한 장애인.
- 뇌병변장애인, 척수장애인, 근육장애인, 자폐가 심한 발달장애인, 언어 및 청각, 시각 등 중복장애인 등
- 탈시설(준비)장애인 : 탈시설정책과 연계



근무조건

- 근로내용

구분	직무내용
권익옹호활동	○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한 공공장소 퍼포먼스,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시 불편사항 및 각종 장애인차별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 활동 등
문화예술활동	○ 장애인이 미술, 사진,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참여 창작활동 ▶ 장애인이 직접 자신의 생각, 소망 등을 표현하는 행위 예술 등
인식개선활동	○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강의공연 활동 등 ▶ 장애인이 교육기관에 방문하여 악기 연주 등 특기 시연

* 자립생활지원센터 자조모임 시 참여 하여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주고, 장애인들의 불편함이나 차별에 관한 사항을 듣고 개선 요구, 지체 장애인 협회 내 문화 여가 활동 시 동행, 타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와의 소통 창구 역할 등

- 근로조건 및 보수(보건복지부 복지일자리사업과 동일 지원)
 - 근무시간 : 월 60시간이내(주 15시간 이내, 1일 3시간이내)
 - 월보수액 : 월 786,100원(시급 10,03원, 퇴직금 없음)
 - 가입보험 : 산재 및 고용보험
- 지원기준 : 1인당 월786,100원, 운영비 월 173,700원



그간 추진 현황

○ 거창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배정현황

연도	2022	2023	2024	2025	비고
배정인원 (시행주체)	0 (미시행)	0 (미시행)	2 (거창군 직접수행)	2 (거창군 직접수행)	

○ 2022년 경상남도 신규사업으로 거창군은 2022년, 2023년 미시행

○ 2024년 중증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2024. 3. 21.)

- 사업기간 : 2024. 5. 1. ~ 2024. 12. 31
- 추진방법 : 직접수행
- 사업대상 : 거창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등록·미취업 최종증 장애인 2명
* 뇌병변 최종증장애인 1명, 지적 심한장애 1명
- 사업비 : 17,029천원(도 5,109, 군 11,920)
- 근무시간 : 월 60시간이내(주 15시간 이내, 1일 3시간 이내)
- 월보수액 : 월 772,780원(시급9,860원, 퇴직금 없음)

○ 2025년 중증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2025. 3. 18.)

- 사업기간 : 2025. 4. 21. ~ 2025. 12. 31.(추진중)
- 추진방법 : 직접수행
- 사업대상 : 거창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등록·미취업 최종증 장애인 2명
* 뇌병변 최종증장애인 1명, 지적 심한장애 1명
- 사업비 : 16,885천원(도 5,066, 군 11,819)
- 근무시간 : 월 60시간이내(주 15시간 이내, 1일 3시간 이내)
- 월보수액 : 월 786,100원(시급10,030원, 퇴직금 없음)



위탁의 필요성

- 공공 한계 극복 및 업무 효율성 확보
 - 2년간의 직접수행으로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한계가 있었고, 세심한 인력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음.
- 지역사회 자원 활용 용이
 - 민간기관은 타 기관 및 주민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고,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유리함



위탁 추진계획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5. 10월 임시회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2026. 1월
 - 위탁기간 : 2026. 3. 1. ~ 2029. 2. 28.(3년)
 - 수탁대상 기관 : 거창군에 소재하며 아래 기준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자격기준]

- ▶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 위·수탁 협약체결 : 2026. 2월 중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시행 : 2026. 4월 중



기대효과

- 민간노동시장에서 생산성과 경쟁기준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 특히 최 중증장애인에게 참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맞춤형 공공일자리 추진
-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 인식개선을 위한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식개선활동’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해소
-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

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2025년 권리중심 최종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안내 지침」 p.16~18

9 수행기관 선정

- (추진방식) 시군 직접 수행 및 시군 자체 공모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 자격기준) 해당 시·군에 소재하며 아래 기준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자격기준]

- ▶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 ▶ 공통사항 : 일자리 참여 수요가 최소 5명 이상
- [예외 : 일자리 배정수요가 5명 미만 공통사항 기준 미적용]

- (수행기관 평가기준)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목적(20점), 사업수행능력(20점), 사업계획 충실도(50점), 효과성(10점)으로 평가
- (수행기관 선정) 공고 결과 신청기관이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심사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 가능
 - ※ 70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자체는 수행기관 추가 모집을 위한 재공고 가능
- (이의제기)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하도록 안내 조치

10 수행기관 주요업무

- 일자리 참여자 선발 및 직무배치
 - 참여자 공개모집 및 지원서 접수, 심사, 선발, 근로계약 체결*, 직무배치 등
- 참여자 복무관리(출·퇴근, 연가, 병가, 참여중단 등 근태관리)
- 수행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목표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후 승인을 통해 변경 가능
- 지역기관과 연계한 일자리사업 추진은 해당 지자체의 사전승인 받아야함
- 보조금 집행, 정산 및 일자리 추진실적 보고 등
 -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 등(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침 준수)
 - 일자리 참여자 직무 기본교육 등 실시
- 참여자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자료제작 및 만족도 조사 실시

11 수행기관 유의사항

- 수행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그밖에 보조사업관 관련된 관계법령 및 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함
- 수행기관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추진약정서)또는 시군의 처분(예시 : 현장점검 후 개선명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용 사례]

- 당초 사업실행계획에 없는 용도 외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 예산변경 사전 승인 없이 변경된 예산항목을 집행한 경우 등

- 수행기관은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예산을 변경 하려면 사전에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함

- 사업을 운영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고용장려금 및 운영수익금이 발생 하는 경우, 동 사업의 운영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다른 용도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이 선정된 후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시군에 사업포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교부된 보조금은 반납해야 함
- 시군과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음
- 수행기관은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경남도와 시장·군수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 하게 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은 실무담당자, 전화, 이메일, 사무실 주소, 단체명, 대표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시군에 통보
- 사업진행도중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진행이 부진하거나 회계집행이 부실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025 - 170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가.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1)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
- 2)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구인모)
- 3) 사 업 비 : 28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26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출연금	260	240	240	220	280

※ 2025년 출연금 220백만원(2025년 대비 60백만원 증액)

4) 사업내용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인건비) : 220백만원
- 공인시험기관 및 조달물자전문검사기관 운영 장비 구입 : 30백만원
- 거창석재산업 홍보사업 : 30백만원

나. 예산지원 사유

- 1) 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기업애로해소, 공인시험서비스 제공, 대내외 네트워크 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석재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2) 따라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시험·검사 장비 구입, 그리고 홍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거창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외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것임

다. 2026년 화강석 연구센터 주요사업

- 1) 거창화강석 홍보사업 추진(2026년 핵심사업)
- 2)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운영
- 3)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 활용

3. 관계 법규 및 조례

-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 나.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4. 참고사항

- 가. 출연 기관 운영현황 : 붙임 1
- 나. 관계법령 : 붙임 2

I

연구센터 일반현황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연구센터 현황

- 법 인 명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 거창군수)
- 법인허가(설립등기) : '07. 1. 31.(자본금 : 10백만원(거창군 출연))
- 임원현황 : 이사장 외 11명 (이사 10, 감사 2)
- 직원현황 : 총 6명(센터장 1, 연구직 2, 기술직 3)

성 명	직 책	담 당 업 무	학위/자격
최태환	연구센터장	연구센터 업무 총괄 / 기업지원 / 협력네트워크	학사/'가'
정영일	책임연구원	시험기관 총괄 / 법인 운영 / 사업 관리 / 기술개발	석사/'가'
이승안	연 구 원	시험기관 품질 및 기술업무 지원 / 채석기술 지원	학사/'다'
이진호	기술팀장	기능석재 공장운영 책임, 품질시험실무 등	학사/'다'
변태식	사원	품질시험실무 및 보유 장비운영 등	학사/'마'
박지훈	사원	품질시험실무 및 보유 장비운영 등	고졸/'마'

연구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성과

□ 2025년도 성과목표 및 실적

구 분		'25년도 성과 목표	'25년도 실적 (8월말)
기업지원 (석산/가공)	기업애로사항 지원	20건	14건
	석재 시험분석 지원	600건	359건
	채석/사면 평가 지원	1건	1건
	석재관련 대외업무 지원	15건	7건
	홍보 마케팅 지원	10건	4건
학술연구용역	학술 및 용역 수주	3건	3건
연구개발	기술개발 및 제품화	2건	2건
경영수익	공인시험기관 운영	180,000천원	74,366천원
	채석/사면 평가 지원	15,000천원	15,000천원
	학술연구/기타 수익금	85,000천원	67,200천원
	합 계	280,000천원	156,566천원

□ 주요업무 추진실적

○ 석재관련 기업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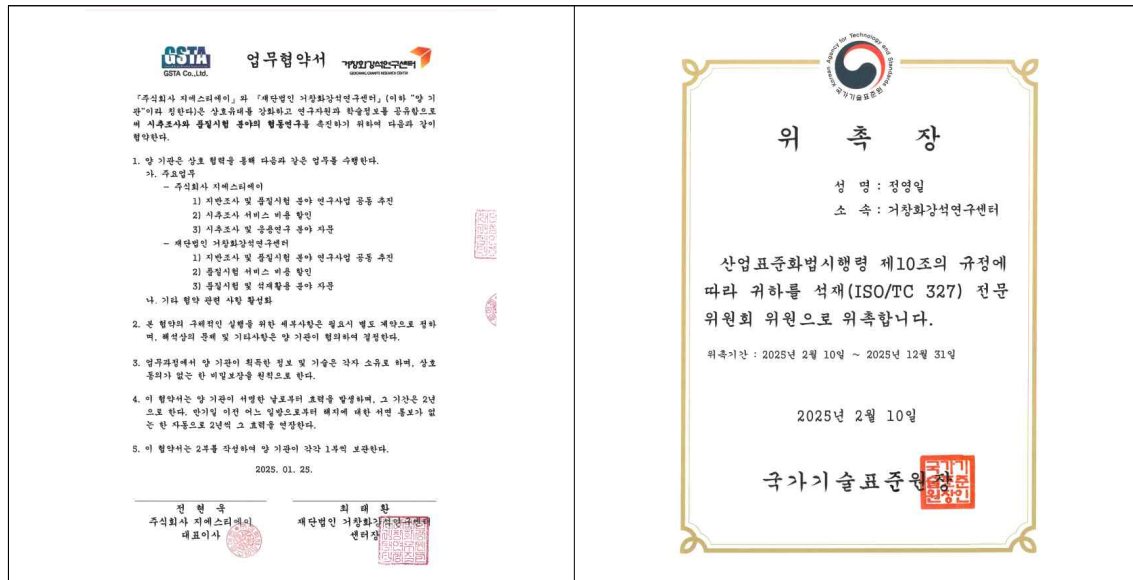
- ▶ 홍보물 편집 및 제작 요청에 따른 제작 지원
- ▶ 화강석 홍보 전시장 설립을 위한 도면 및 콘텐츠 제작 지원
- ▶ 석면, 라돈 등 유해성 관련 자문 지원 등

카스토퍼 제품비교

구분	A사 콘크리트보호제 물막이형(수중) (중도~중도)	B사 합성수지 물막 형(수중형) (중도~중도)	C사 합성수지 물막 형(수중형) (중도~중도)	D사 합성수지 물막 형(수중형) (중도~중도)	E사 합성수지 물막 형(수중형) (중도~중도)
제품사진					
노후사진					
원재료	콘크리트	합성수지	합성수지	합성수지	합성수지
제품두께 (중도~중도)	5~10mm	5~10mm	5~10mm	5~10mm	5~10mm
타입	타입	타입	타입	타입	타입
내구성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내수성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부착방법	탄산시멘트 부착	탄산시멘트 부착	탄산시멘트 부착	탄산시멘트 부착	탄산시멘트 부착
부착강도	20년 이내	20년 이내	20년 이내	20년 이내	20년 이내
유지보수 기간	최대 50년 이내	최대 50년 이내	최대 50년 이내	최대 50년 이내	최대 50년 이내
유지보수 비용	30~50만 이내	30~50만 이내	30~50만 이내	30~50만 이내	30~50만 이내
규격	750×180×110 mm	100×200×170 mm	100×200×170 mm	100×200×170 mm	100×200×170 mm
공급업체	사(주)한국 콘크리트 보호제	사(주)한국 콘크리트 보호제	사(주)한국 콘크리트 보호제	사(주)한국 콘크리트 보호제	사(주)한국 콘크리트 보호제
시공방법	설치 후 48시간 이내 시공	설치 후 48시간 이내 시공	설치 후 48시간 이내 시공	설치 후 48시간 이내 시공	설치 후 48시간 이내 시공
가격대	100,000원 (100㎡당)	100,000원 (100㎡당)	100,000원 (100㎡당)	100,000원 (100㎡당)	100,000원 (100㎡당)

○ 석재관련 대외업무 지원 및 네트워크 활동

- ▶ 엔지니어링 전문기업과 업무협약 체결(MOU, (주)지에스티에이)
- ▶ 석재전문위원 위촉 및 석재전문위원회 활동(정영일 책임연구원)
-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정영일 책임연구원)
- ▶ 조달청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검사원 표창장 수여(정영일 책임연구원)



○ 공공·민간부문 연구용역 수행

- ▶ 한국임업진흥원 ‘2025 조경석 가이드북 제작’ 용역 수행
- ▶ 국토교통부 “2025 골재자원조사/골재 불소 발생평가” 용역 수행 중
- ▶ 한국임업진흥원 “2025 석재자원조사 ” 용역 수행 중
- ▶ 2025 토석채취허가지 항공촬영 및 지적 분석



○ 거창화강석 품질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 ▶ 거창화강석, 조달물품 대상 석재 유해성(석면 등) 분석
- ▶ 거창화강석, 조달물품 관리를 위한 대자율 측정



○ 거창화강석 홍보/마케팅 업무 지원

- ▶ 연구센터 주요 추진업무 홍보(신문)
- ▶ 연구센터 공인시험기관 재인정 및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우수기관 홍보(신문 및 블로그)
- ▶ 거창기업 개발 우수제품 방문 홍보



□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성과

○ 조경석 단체표준 규격 제정을 통한 거창기업 매출액 증대

- ▶ 2012년 조경석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용역 수주 및 단체표준 제정
- ▶ 2013년 조경석 조달다수공급자(MAS) 물품 등록
- ▶ 연구센터에서 조경석 생산 권장 및 조달청 등록 제안을 통하여 당시 거창 관내 조경석을 생산하는 3개 기업의 매출액은 37억이었으며, 현재 13개 기업이 조경석을 생산하며 매출액은 200억에 달함

- ▶ 연구센터는 조경석이 조달청 관급 물품에 지속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조달청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통하여 업체에게 고품질의 조경석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음

<거창 관내 기업 조경석 매출액>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거창 업체수 (개)	5	7	8	9	11	10	9	11	11	9	13
매출액 (억)	25	92	86	87	94	88	109	139	101	135	219

○ 석재 원산지 검증활동 지원 효과(울산지역 조사 결과)

- ▶ 국내 유일의 석재 원산지 검증기관 → 거창화강석 사용 유도
- ▶ 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석재 원산지 판별에 대한 과학적 검증 연구를 통해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조달청 및 한국석재공업 협동조합 원산지 단속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중국산 저가 석재가 국내석으로 둔갑하여 공급되는 부작용을 막아 국내 석재산업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음
- ▶ 2013년 울산 “ㄷ”업체의 부당납품 사례를 적발함으로써, 울산지역 관급 물량에 대한 거창 관내 업체의 매출이 평균 10억 이상 증가하였음
- ▶ 파악되지 않는 타 지역까지의 효과를 예상한다면 상당한 매출액의 증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20	2021	2022	2023	2024
울산관급물량	1,819	2,482	1,854	2,000	1,497	2,355
울산 “ㄷ”석재	1,114	-	-	-	-	-
거창 관내업체	520	1,918	1,371	1,402	1,291	1,668
타 지역 업체	202	564	483	598	206	687
거창업체 점유율	28.6%	77.3%	74.0%	70.1%	86.2%	70.9%

○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통한 법인 인지도 증대 및 매출 증가

- ▶ 2013년 석재 관련 5개 시험항목 인정
- ▶ 2020년 골재 관련 8개 시험항목 인정
- ▶ 조달청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운영

(단위 : 억)

년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매출액	1.9	2.2	1.8	1.8	2.2
건수	605	584	595	554	608

Ⅲ 2026년 주요사업 추진내용

□ 핵심사업 : 거창석재산업 홍보사업

- 사업목적 : 거창 석재산업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석재산업 활성화 및 이미지 제고

○ 사업내용

- 거창화강석 입체 가이드북 제작을 통한 석재산업 홍보
- 교육용 석재(암석) 표본 제작을 통한 석재산업 홍보
- 석재전시장 운영을 통한 석재산업 홍보
- 2026 거창한마당대축제 『석재 체험장』 부스 운영

○ 사업효과

- 거창화강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이해도를 폭넓게 제고함으로써,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
- 산업과 교육의 융합을 통해 거창 석재산업의 우수성과 긍정적 이미지를 확립하고, 미래 인재들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
- 거창화강석의 우수한 특징과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알림으로써, 단순한 전시 관람을 넘어 석재 산업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흥미를 높이는 학습·체험의 장을 제공

□ 주요사업

○ 기업애로사항 지원

- 지역 석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품질, 경영 등 전반적인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해결 방안을 제공함

○ 공인시험기관 및 조달전문검사 운영

- 국제규격의 품질경영시스템 운영과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을 통해 거창화강석의 품질과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연구센터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자립화에 기여

○ 석재관련 대외업무 지원 및 협력 네트워크 활동

- 지역 석재산업의 대외 인지도 제고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관련 기관, 기업, 학계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석재 관련 대외업무를 지원함.

○ 연구개발 및 연구용역 수주

- 지역 석재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실용적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과 외부 용역 수주를 연계하여 수행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 개발과 연구센터의 수익 창출을 동시에 달성함

□ 기대효과

- 지역에서 차지하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중요성 인식 제고
- 석재산업을 선도하는 거창군 위상 및 거창화강석 산업 중흥 기대

【 출연기관 현황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설립근거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 규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전화번호 : 055-943-3924			
				홈페이지 : granite.re.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07. 1. 31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5. 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6명		6명	0명			
임 원 (‘25. 9.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거창군청(거창군수)	당연직			
	상임이사	최○○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			
	비상임이사	조○○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장	〃			
		이○○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장	〃			
		한○○	거창석재조합(주) 대표	〃			
		이○○	거창석산협회장	〃			
		김○○	거창군청(경제기업과장)	〃			
		주○○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수	‘25. 3. 21. ~ ‘28. 3. 20.			
		김○○	한국승강기대학 교수	‘25. 3. 21. ~ ‘28. 3. 20.			
		임○○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25. 3. 21. ~ ‘28. 3. 20.			
	감 사	강○○	거창군청(산림과장)	당연직			
		변○○	변법식변호사사무소 대표	‘25. 3. 21. ~ ‘28. 3. 20.			
주요기능	거창화강석 1, 2차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및 개발, 품질유지 및 관리, 공인시험 서비스 등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2025) (단위:백만원)	22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3	2024	2025	재무현황 (백만원) ‘24.12.31기준	자산	627 (자산 총액)
	예산액 ²⁾	972	1,066	1,085		부채	11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240	240	220		자본 ¹⁾	616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4.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92			218		8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69호, 2025. 4. 1., 일부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 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경제복지국 산림과) [시행 2022. 8. 10.]

제9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가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거창 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5 - 171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가. 거창 임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함
- 나. 이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업 : 거창 임업대학
- 나. 위탁사무
 - 1) 거창군 임업대학 교과목 설계 및 세부일정 수립
 - 2) 교육교재 제작 배부 및 강사 섭외·관리
 - 3) 교육 전반에 관한 운영관리
 - 4) 교육 후 교육완료 보고서 제출
 - 5) 현장실습 및 평가 진행 등
- 다. 위탁기간 : 2026. 3. ~ 12.
- 라.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참고사항

-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1) 임업경영과 관련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거창 미래임업을 선도할 임업인재 리더 육성 및 선진 임업경영을 위한 경쟁력확보
- 나. 관계법령
 -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훈련등 지원)
 - 2)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지원 조례」 제4조(책무) 및 제5조(재정지원)
 -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향후계획

- 1)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5. 10월 임시회
- 2)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6. 1월
- 3)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26. 2월
- 4) 위·수탁 협약체결 : 2026. 3월 중
- 5) 임업대학 입학생 모집 : 2026. 4월
- 6) 임업대학 운영 : 2026. 5월 ~ 10월
- 7)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 2026. 11월 ~ 12월

라. 소요예산(2026년 기준) : 30백만원(군비)

마. 위탁운영계획 : 따로붙임

1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훈련 등 지원)
-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지원 조례 제4조(책무) 제5조(재정지원)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등

2 위탁개요

- 사 업 명 : 거창 임업대학
- 위탁기간 : 2026. 3. ~ 12.
- 추진방법 : 공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수탁자 자격 : 산림청에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사 업 비 : 30백만원(군비)
- 위탁내용 : 교육강사 섭외,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교육교재 제작, 교육재료 준비, 출결관리, 실습 및 평가 진행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운영관리

3 추진계획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5. 10월 임시회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6. 1월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6. 2월
- 위·수탁 협약체결 : 2026. 3월 중
- 임업대학 입학생 모집 : 2026. 4월
- 임업대학 운영 : 2026. 5월 ~ 10월
-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 2026. 11월 ~ 12월

4 기대효과

- (전문성 강화) 산림, 임업 분야의 전문기관의 기술, 교육경험을 체계적이고 실무중심의 교육이 가능
- (운영효율 제고) 전문기관에 위탁시 행정절차 단축, 예산집행이 효율화
- (현장밀착형 교육)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커리큘럼 운영으로 취,창업 연계지원 효과
- (비용절감) 전문기관의 인프라(시설, 장비,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 투입대비 효과가 높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훈련등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 또는 산림경영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및 상담·자문·지도(이하 “교육·훈련등”이라 한다) 업무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 ② 산림청장은 교육·훈련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교육·훈련등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산림청장은 교육·훈련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 ④ 전문교육기관이 교육·훈련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교육·훈련등 프로그램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 2022. 6. 10.>
-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2022. 6. 10.>
- ⑥ 산림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지원 조례

제4조(책무)

-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업의 발전을 위한 산림사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② 군수는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들이 농촌·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경영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거창군에 주소를 둔 자 이어야 하며, 독립가와 임업후계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과수 및 밤나무 재배지에 지상·항공 방제 사업
2. 산림 내 자생하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를 위한 정제 기계류 지원사업
3. 산양삼 재배자 교육
4. 산림용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5.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
6. 전문임업인 육성 및 전문임업인 단체 보조사업
7. 전문임업인에게 임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이나 국내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등에 대한 지원
8.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노목의 대체작목 전환 및 전정·시비사업
9. 임산물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
 - 가. 산삼 또는 산양삼 축제 및 행사
 - 나. 체험행사
 - 다. 전국대회 행사 참가 등
10.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의 톱밥 생산비 지원
11. 그 밖에 거창군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